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는 구입일로 하며, 대여 제품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가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대여제품에 대하여 계약종료 30일 이전에 복지용구사업소에 사용유무를 통보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자동갱신 된다.

제3조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계약체결 및 제공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와 복지용구사업소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한다.
1. 사업소는 계약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수급자(보호자)에게 발행하고 1부는 보관한다.
2. 수급자(보호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3. 복지용구 제품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4. 복지용구 사용 방법 및 사용상 유의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다.
5. 고장 시 처치방법 및 A/S 등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6. 복지용구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포털에 계약내용을 직접 등록한다.
7.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포털에 직접 등록한다.

제4조 (복지용구 계약해지) 복지용구 계약 해지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구입품목
가. 수급자가 제품을 사용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7일 이내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나. 계약해지에 따라 수급자(보호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하여 환불 처리한다.
2. 대여품목
가. 수급자(보호자)가 대여 도중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
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마. 가·나·다·라 항에 의거 수급자(보호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계약해지 통보를 즉시 해야 한다.

바. 대여품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선납 한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하여 환불 처리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의무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권리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내역서에 대하여 요청.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요청.

다. 수급자의 복지용구 각 품목별 제품에 대하여 사용 설명 및 서비스에 대한 요청.

2. 의무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비용부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복지용구사업소에 즉시 통보.

라.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 내용 준수.

마. 장기출장 등으로 수급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바.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제6조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7조 (급여대상자) 급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급여자 중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급여가 가능하며 시설급여 이용 시는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3. 복지용구 대여품목 이용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된다. 단, 단기 입, 퇴원 시 수급자(보호자)와 상의 후 입원기간 동안만 급여해지 후 다시 이용가능.

4. 복지용구 대여품목 이용 중 시설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이용 할 수 없다.

제8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구분한다.

1. 구입방식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2.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의 물품을 복지용구사업소로부터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한다.

3. 구입품목 10종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매트, 방지액, 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제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4. 대여품목 8종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5. 구입 또는 대여 선택 가능한 품목 2종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

제9조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비율은 다음 표에 준한다.

구분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률	15%	9%	6%	6%	없음
공단부담률	85%	91%	94%	94%	100%

제 10조 (급여비용 청구) 급여비용 청구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을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제9조에 의거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품목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제9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포탈을 통해 공단에 청구한다.

제 11조 (급여기준) 복지용구 급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수급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내구연한 내 2개 제품 구입가능)
나. 대여제품의 경우에 각 품목당 1개의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다.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 가능 개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구분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 매트·액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최대급여 가능개수	6개	5개	5개	10개	2개

2. 수급자(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에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승인한 경우 추가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 기간 중 제품이 심하게 훼손, 마모되어 제조사에서 A/S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나. 수급자의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3.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 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4.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단, 복지용구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5.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단, 연속 대여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6.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